

6.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686호 1998. 2. 24

주요 골자

- 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3호).
- 나. 과다선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대통령령 제15564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제3항).

개정 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관련 사항의 적용시기도 이에 맞추어 앞당기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단서중 “법 제18조의3제3항”을 “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9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84조제3항 전단중 “제21조의2 및 제37조제4”를 “제21조의2·제37조의4 및 제37조의9”로 한다.

제94조의2제1항제1호 단서중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5제6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동부칙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9항제13호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